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27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노을

피 고 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21. 3. 3

판결 선고 2021. 3.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9. 20. 접수제172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유한회사 B'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6.6. 22. 대출금액 3억 원,이자율 연 4.08%, 지연배상금을 연 12%로 하는, ② 2019. 8.22. 대출금액 2억 원,이자율 연 2.45%, 지연배상금을 연 6%로 하는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20. 9. 25. 기준으로, 위 각 대출약정에 따라 유한회사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대출원리금은 407,698,111원이다.

다. 유한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자이다.

라.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유한회사 B는 2019. 9.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접수 제17261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4, 6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C 주식회사,D은행(2021. 1.29. 신청한 것)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 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판계 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유한회사 B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유한회사 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 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유한회사 B의 재산상태(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 전후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내역)와 유한회사 B가 회 생신청을 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유한회사 요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유한회사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유한회사 B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많이 증가하자 피고는 근저당설정 등의 조치가 없으면 납품이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 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 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설령 피고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한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유한회사 B에게 전주 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9. 20. 접수 제172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원식

별지